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업주의 근로자에게 적합한 보호구 지급 의무 명시〉

■ 강득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603호)

2024.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손을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사업주의 근로자에게 적합한 보호구 지급 의무 명시	2

I. 제안경위

2024년 9월 3일 강득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2024년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유해·위험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함. 그런데 이러한 의무규정이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에 근거하고 있어, 사업주에 대한 규범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근로자의 성별 및 신체 특징에 따라 착용이 가능한 보호구의 크기 등이 다름에도 현행 시행규칙에는 이러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보호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지 않아 여성 또는 체구가 작은 근로자 등이 안전에 취약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사업주의 보호구 지급 의무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근로자의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사업주의 근로자에게 적합한 보호구 의무 명시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사업주에게 유해·위험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고려한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등의 보호구 지급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등).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40조의2(보호구의 지급)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등의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별) 제2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별) ----- -----

제40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

제175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_____

1. · 2. (현행과 같음)

3. 제40조의2(제166조의2에서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
조제2항-----

설공사도급인만 해당한다), 제7조제1항, 제78조, 제85조제1항, 제93조제1항 전단, 제95조, 제99조제2항 또는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한 자 4. ~ 8. (생략) ⑤ ~ ⑦ (생략)	----- ----- ----- ----- ----- ----- 4. ~ 8. (현행과 같음) ⑤ ~ ⑦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38조 및 제39조¹⁾은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및 근로자의 건강

- 1)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흙(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장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에서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면서²⁾ 구체적인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는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일정한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 안전모, 안전대, 보안경 등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제33조는 보호구의 관리 의무를, 제34조는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 전용 보호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³⁾

-
-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제167조(벌칙)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1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22조제1항 또는 제157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3)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 2024. 6. 28.>

-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安全帶)
- 3.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 4. 물체가 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개정안은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법률에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성별과 신체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보호구를 지급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는 사업주 의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입법의 의의가 있음.

다만, 현행법으로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벌칙이 부과될 수 있기에 별도의 과태료 부과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는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근로자를 둘러싼 외부 환경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할 보호구의 적합성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신체적 특성’이라는 근로자 개인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 근로자의 산업재해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 더 부합될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8. 선창 등에서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진마스크

9.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

10.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배달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5)에 따른 이륜자동차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11.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배달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등을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

② 사업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33조(보호구의 관리) ① 사업주는 이 규칙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방진마스크의 필터 등을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4조(전용 보호구 등) 사업주는 보호구를 공동사용 하여 근로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 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서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호구의 지급 의무 규정을 법률로 별도로 규정할 입법적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신체적 조건’은 근로자 개인별로 달라 객관적 기준을 설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재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45